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)

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제20조제2항제10호 중 “전압 600볼트 이상”을 “전압 1,000볼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10호 나목 중 “전압 600볼트 이상”을 “전압 1,000볼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4(분리발주의 예외) 법 제14의3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(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)
2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

[별표 1] 전력기술인의 자격 중 “철도신호, 전기철도”을 “철도전기신호”으로 한다.

[별표 7]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정지 처분의 기준(제9조의2 관련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7]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정지 처분의 기준(제9조의2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
<u>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 제 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 수첩을 빌려 준 경우</u> <u>1.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</u> <u>2.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</u> <u>3.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</u> <u>4.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</u>	<u>법 제8조의2제2항제1호</u>	<u>인정정지 6개월</u> <u>인정정지 1년</u> <u>인정정지 2년</u> <u>인정정지 3년</u>

비고 :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조의2(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)</u> <u><신 설></u> 제20조(공사감리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 시설물 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전력 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.~9. (생략) 10. 발전기 또는 <u>전압 600볼트 이상</u>의 변압기·차단기·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. 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및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. <u>전압 600볼트 미만인</u>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~④ (생략)	<u>제9조의2(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)</u> <u>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.</u> 제20조(공사감리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 시설물 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전력 시설물공사를 말한다. 1.~9. 생략 10. 발전기 또는 <u>전압 1,000볼트 이상</u>의 변압기·차단기·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. 가. 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및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. <u>전압 1,000볼트 미만인</u>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~④ (생략)

제25조의4(분리발주의 예외) <신설>

제25조의4(분리발주의 예외) 법 제14의3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(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)
2.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

[별표 1] 전력기술인의 자격

등급	국가기술자격자	학력 경력자
특급기술자	• 기술사	-
고급기술자	(생략)	-
중급기술자	(생략)	(생략)
초급기술자	(생략)	(생략)

※비고

1. 위 표에서 “기술사”, “기능장”, “기사”, “산업기사” 및 “기능사”란 각각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가. 기술사: 발송배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건축전기설비

나. 기능장: 전기

다. 기사: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

[별표 1] 전력기술인의 자격

등급	국가기술자격자	학력 경력자
특급기술자	• 기술사	-
고급기술자	(생략)	-
중급기술자	(생략)	(생략)
초급기술자	(생략)	(생략)

※비고

1. 위 표에서 “기술사”, “기능장”, “기사”, “산업기사” 및 “기능사”란 각각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종목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가. 기술사: 발송배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건축전기설비

나. 기능장: 전기

다. 기사: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

호, 전기철도

라. 산업기사: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

마. 기능사: 전기, 철도신호, 전기철도

[별표 7]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정지 처분의 기준(제9조의2 관련)
<신설>

호, 전기철도

라. 산업기사: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

마. 기능사: 전기, 철도전기신호

[별표 7]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정지 처분의 기준(제9조의2 관련) (신설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처분기준
<u>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</u> <u>1.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</u> <u>2.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</u> <u>3.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</u> <u>4.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</u>	<u>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</u>	<u>인정정지 6개월</u> <u>인정정지 1년</u> <u>인정정지 2년</u> <u>인정정지 3년</u>

비고 :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의 처

	<u>분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